

『구미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 조례안』

검 토 보 고 서

1. 제 안 자 : 구미시장

2. 제안이유

- 2003. 11. 26 구미시도시계획조례 공포 운영 중 주민생활에 불편을 초래하는 민원을 해소하고 도시행정 서비스의 질을 향상시켜 시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 도시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기 위함.

3. 주요내용

- 농지안에서 허가를 받지 아니하여도 되는 경미한 행위중 경작을 위한 토지의 형질변경 행위(수직으로 2m이하의 절토·성토·매립·토사의 채취) ⇒ 삭제
- 제1종 일반주거지역에 액화가스판매소 설치 가능토록 개정
- 개발행위 허가 농림지역1만㎡미만 ⇒ 2만㎡미만 개정
- 기타 법령 개정에 의한 조문상의 용어 등을 보완 정비

4. 참고사항

-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3조, 제55조, 제71조

5. 검토의견

- 현행 시행중인 구미시도시계획조례 중 일부 불합리한 사항을 삭제 또는 개정함으로써 상위법에 대한 위헌소지를 없애고, 타 시군과 비교하여 지나치게 규제된 사항의 해제로 주민생활에 불편을 초래하는 민원을 해소함과 동시에 시민의 재산권 보호를 위해 개정함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됨.
- 조례안의 내용이, 상위법령이나 다른 조례와, 상충되는 사항은 없는 것으로 판단됨.